

2024년 3월 불법어업 지도 · 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불법 현황

- ▶ 실뱀장어 어장 선점을 위해 일부 어업인의 구획이탈·무허가 어구 설치 중(매년 1~2월)
- ▶ 서해중부(충남·전북) 연·근해 안강망 조업 시기 도래에 따른 어장선점 및 초과부설 등 경쟁적 조업으로 업종 간 조업분쟁 예상

중점 확인사항

[해상]

- ▶ (실뱀장어안강망) 허가유무(구획이탈), 어구길이 위반(암·수해 20m 초과), 어구 실명제 준수여부 등 위반행위 집중 점검
- ▶ (연·근해안강망) 어구 실명제 준수여부, 항적 정보를 통한 사용량 확인 및 실제 어구사용량 점검(어구규격 점검 병행)

[육상]

- ▶ (실뱀장어안강망) 전남·전북지역 실뱀장어안강망 부설현황, 유통경로 등 조업 실태파악 및 불법어구 적재여부 등 점검
- ▶ (연·근해안강망) 주요 항포구(보령, 군산 등) 어선 출항 전 초과부설 정황 파악을 위한 어구 적재량 확인(집중 관리선박 선정) 및 그물코 규격 등 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 「수산업법」제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

* (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수산업법」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 (사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수산업법」제76조 어구실명제 미이행

* (사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불법 어구적재

* (사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카-1 및 부도 카-2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또는 자루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 이 경우 바지는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배 모양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나) 자루그물 상부와 하부가 수해와 암해로 구성된 어구(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10미터 이하. 다만, 1통의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해·암해의 길이는 각각 20미터 이하)

다) 자루그물 속에 깔매기를 부착한 어구. 다만, 자루그물 속의 깔매기는 선택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1척으로 1)에 적합한 1통 또는 2통의 어구를 허가된 구획 안에 부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구 속으로 들어간 실뱀장어를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카-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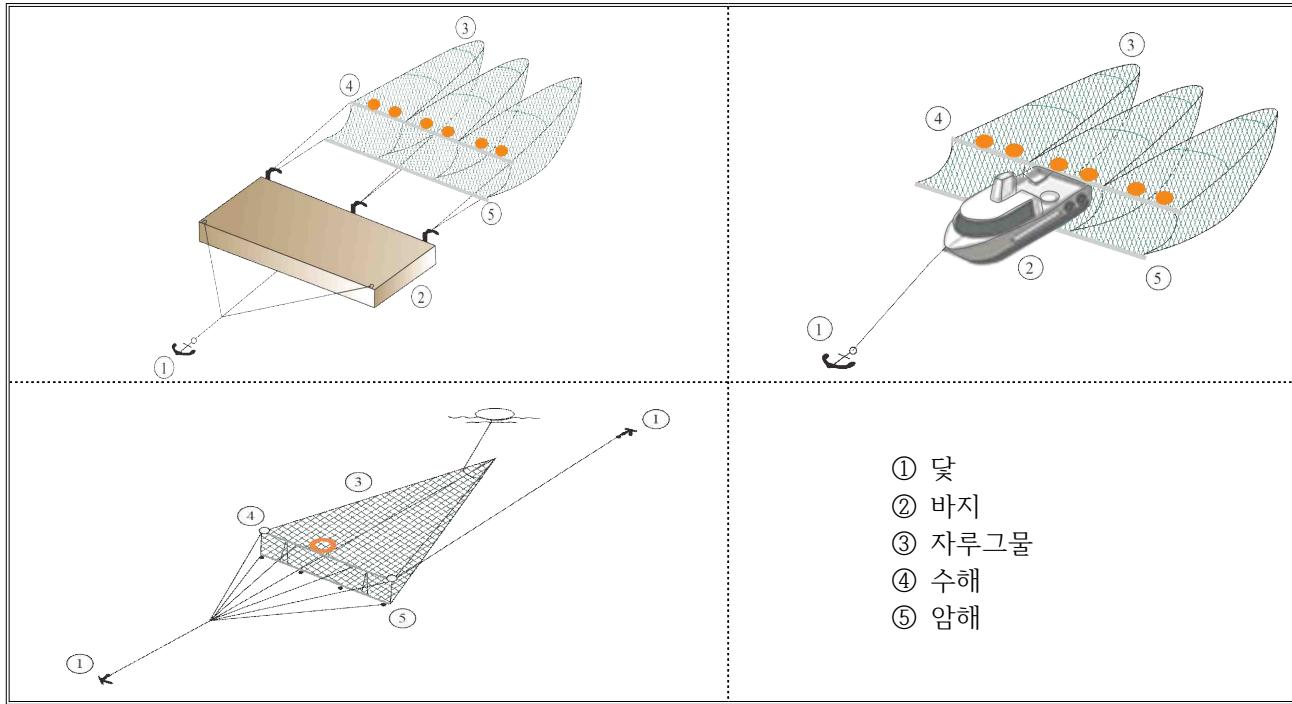
가)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

나) 자루그물을 들어 올려 실뱀장어를 거두어들인 후 다시 투망한다.

다) 1)에 따른 수해·암해의 길이를 각각 20미터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1통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부도 카-1]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타. 근해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표준어구 구성도, 어류분류망 구성도는 각각 부도 타-1부터 부도 타-3까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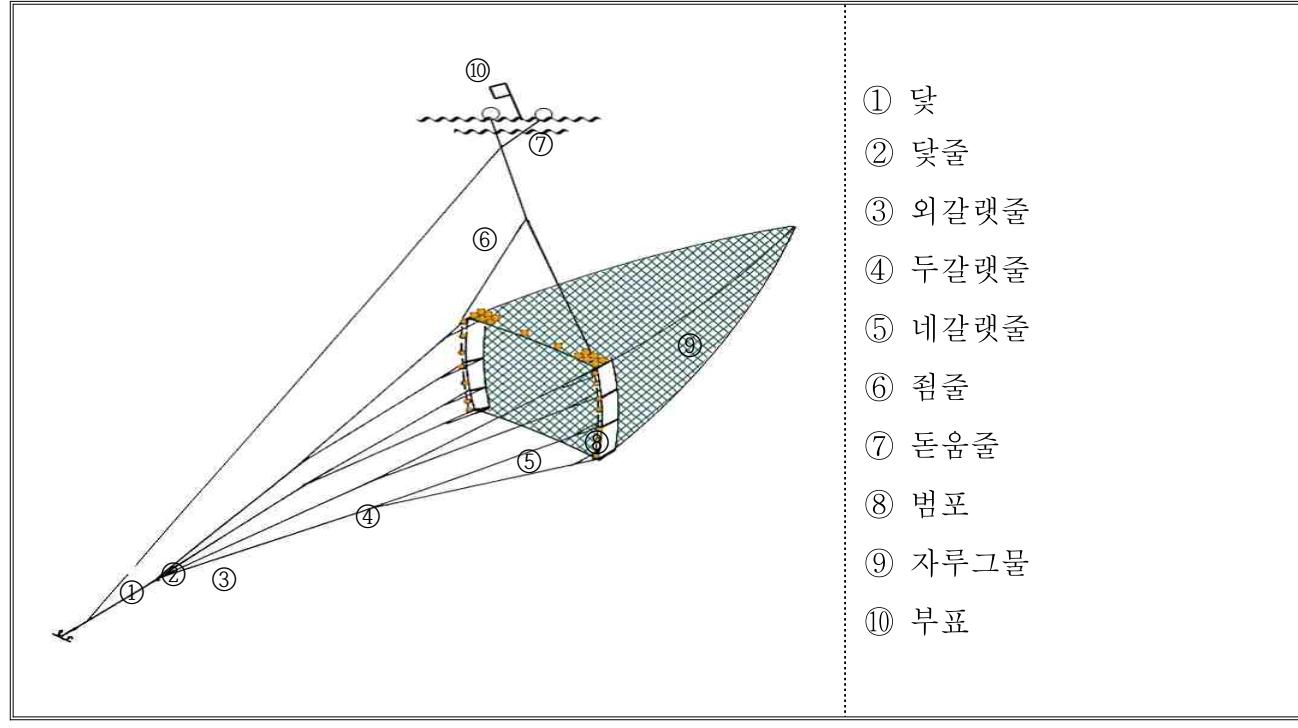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뜬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帆布: 뜻천)를 달아 그물이 상하 또는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 세망(細網)으로 된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 1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거나 실을 수 있다.

- 2) 이 어업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타-4와 같다.

-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를 투하한 뒤 첨줄, 돌움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타-1]

근해안강망 어구 겨냥도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9.>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관련)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1)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 및 표준어구 구성도는 각각 부도 가-1 및 부도 가-2와 같다.

가)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

- 나) 자루그물 입구 상부에는 뜰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며, 양쪽 측면에는 범포를 달아 그물이 수직과 좌우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어구.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또는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뼈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 다) 자루그물 내부에 어류를 분류하는 그물을 여러 개 부착할 경우, 부착한 어류 분류망에는 어류 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별표 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 5통 이내의 어구(어구용 닻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거나 실어야 한다.

- 2)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1)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가-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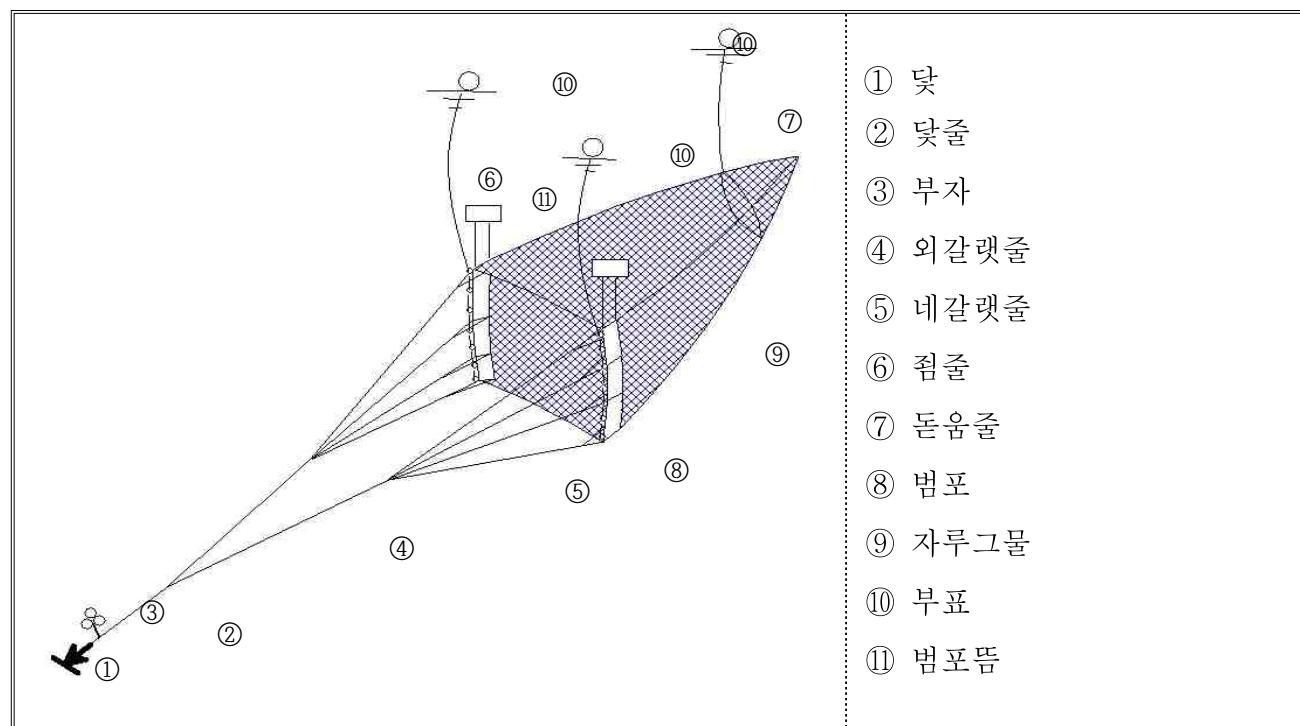
- 가) 자루그물을 해저에 닻으로 고정 부설하여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다만, 연안안강망(낭장망, 주목망)어업에서 개량안강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 이내에서 부설할 수 있다.

- 나) 어구 고정용 닻, 자루그물, 범포(쫑대 또는 뼈침대)를 투하한 뒤 점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다.

-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투망의 역순으로 양망한다.

[부도 가-1]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당시 드는 말씀처럼
서로는 좋았던 나날이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11.(목) 11:00,
(지면) 2024. 1. 12.(금) 조간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듣보기]

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안전성·편의성 높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페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 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꾸어*,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예시) 전라남도 여수시 응천동 웅남 마을 서쪽 끝 → 북위34도45분14.58초 동경127도39분41.38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말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마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임태훈 (044-200-5510)
		담당자	사무관	문재웅 (044-200-5520)